

던 중 미군 3명이 불렀는데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8) 신원미상 미군 6명의 강기동씨 집단폭행 사건

군용버스를 타고 가던 캠프 중위(하알리아 부대 소속) 등 주한미군 6명은 강기동씨(28세, 택시운전사)의 택시를 들이받았는데 이에 항의하는 강기동씨를 집단폭행 하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부산 북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9) 신원미상 미군의 김대웅씨 폭행 사건 (1993년 10월 21일)

동두천시 상폐동에서 김대웅씨(25세)는 퇴근 후 귀가하던 도중 미군 5명이 지나가던 택시를 불잡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격하여 미군들의 행패를 저지하자 대검으로 절리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

(10) 월츠 월리의 박모양 폭행 사건 (1994년 1월 9일)

미군 속 월츠 월리(46세)는 결혼을 미끼로 관계를 맺은 박모양(25세)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태아를 유산시켜 폭력혐의로 입건되었다.

(11) 에드워드 샤크제우스키의 김분임씨 외 두 자녀 살해 사건 (1994년 6월 13일)

미플로리다주 포트월튼 소재 자택에서 국제 결혼한 김분임씨(33세)는 그의 남편 에드워드 샤크제우스키 공군중사(플로리다주 애글린 공군기지 소속)에 의해 두 자녀와 함께 살해된 채로 목욕탕 욕조에서 발견되었다.

(12) 신원미상 미군 2명의 윤종수씨 폭행 사건 (1994년 2월 12일)

윤종수씨(49세, 택시운전기사)는 동두천시 보산동 소재 미2사단 영내 케이웨이 앞 노상에서 미군 2명을 태우고 가다 하차시켜 주었다. 윤종수씨는 50불권으로 요금을 받고 45불 50전을 거슬러 주었는데 미군은 5불권을 숨기고 거스름돈을 덜 받았으며 시비를 걸어 윤종수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13) 신원미상 미군의 박모씨 폭행 사건 (1994년 2월 18일)

박모씨(27세)는 대구시 남구 이천 1동에서 길을 가다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미군에게 전치 2주의 폭행을 당했다.

(14) 신원미상 미군의 임문창씨 부당 정직 사건 (1994년 2월 말)

임문창씨(36세, 택시운전기사)는 미군 대위를 목적지까지 태워다준 후 요금조작 의혹을 받고 회사측으로부터 부당 정직을 당하였다.

(15) 신원미상 미군의 김지호씨 혀위신고 사건 (1994년 3월 2일)

김지호씨(29세, 택시운전기사)는 흑인 여군이 새치기로 승차하려는 것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난 흑인 여군이 김지호씨가 자기를 치었다고 혀위 신고해 미군부대에 압송되어 심문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16) 신원미상 미군 트럭의 이승만씨 교통사고 (1994년 3월 7일)

경기도 교육청 앞 네거리에서 서울로 출발하려는 이승만씨 차량뒷문을 미군 트럭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승만씨는 미군 트럭에 매달려 이 사고에 항의했으나 미군트럭은 이승만씨를 매단 채 3백m가량을 질주하는 등 난폭한 운전으로 시내 교통에 혼란을 주었다.

(17) 제임스 외 3명의 임광일씨 외 5명 폭행 사건 (1994년 3월 12일)

부산 진구 리전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제임스 일병(20세, 하알리아 부대 소속) 등 미군 3명은 한국인 7명과 사소한 시비 끝에 편싸움을 벌여 임광일씨(25세) 등 5명이 크게 다치고 술집 내부 집기가 부서졌다.

(18) 신원미상 미군트럭의 최인호씨 교통사고 (1994년 3월 21일)

최인호씨(49세, 작가)와 동료 2명은 승용차 편으로 경기도 여주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서울에 오던 중 졸음운전으로 맞은편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미군트럭에 부딪혀 16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19) 맥도날드 브라이언 W의 이은경씨 폭소니 사건 (1994년 3월 30일)

경기도 파주군 파주역 앞 횡단보도에서 맥도날드 브라이언 W. 이병(UN군사령부 합동경비구역 소속)이 이은경씨(19세)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나다 잡혔다.

(20) 웨브 테이비드의 강문음씨, 손성익씨 상해 사건 (1994년 4월 23일)

의정부시 가능 1동 714 앞길 웨브 테이비드 상병(24세, 미2사단 소속) 등 4명은 주차되어 있던 강문음씨(28세), 손성익씨(35세)의 차량을 포함한 총 3 대를 군용 대검으로 평크 내고 달아나다 붙잡혀 미군측에 인계되었다.

(21) 신원미상 미군 2명의 김철호씨 폭행 사건 (1994년 4월 30일)

김철호씨(31세, 택시 운전기사)는 문산 선유리에서 미군에게 부탄가스통으로 구타를 당했다. 김철호씨를 폭행한 미군 2명은 미현병대에 넘겨졌다.

(22) 에릭본스 외 20여명 정지교씨 외 10여명 집단폭행 사건 (1994년 6월 16일)

대구시 중구 덕산동 민속주점 골목에서 미군사병 1명이 한국인 여성을 성희롱 하는 것을 보고 정지교씨(28세, 회사원) 등 한국인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부근에서 지켜보던 미군과 미군속 20여명이 달려와 정지교씨를 비롯한 한국인 10여명에게 시비를 걸고 집단 폭행하였다. 미군과 미군속은 편의점과 택시유리창 등을 부수고 달아나다 에릭본스 이병 등 3명만 한국 청년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23) 쿠즈노 스티브의 김재진씨, 엄상호씨 폭행 사건 (1994년 7월 1일)

대구 남구 이천 1동 도솔구이 식당 앞길에서 쿠즈노 스티브 일병(20세, 미8군 307통신대대 소속)이 한국인 여자와 다투는 것을 보고 길 가던 김재진씨(33세)와 이동네 엄상호씨(34세)가 말리자 쿠즈노 스티브 일병은 맥주병으로 김재진씨와 엄상호씨를 폭행하여 미8군 현병대에 넘겨졌다.

(24) 월튼 월리엄의 정현기씨 교통사고 (1994년 8월 26일)

정현기씨(67세)는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2동 소례마을 입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월튼 월리엄 병장(미2사단 소속)이 운전하던 미군용 지프에 부딪혀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25) 버클리 엔터니, 위스덤 더글러그 외 10여명의 김동환씨, 박수근씨 폭행 사건 (1994년 9월 8일)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아리랑식당 앞길에서 버클리 엔터니 이병(21세, 미2사단 제50보병대 소속) 등 흑인 병사 10명이 오토바이를 훔치는 것을 막는 민간인들을 집단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김동환씨(31세) 코뼈가 부러지고 박수근씨(41세)가 다리 골절상을 입는 등 3명이 크게 다쳤으며, 위스덤 더글러그 이병(20세) 등 3명만이 미군 현병대에 넘겨졌다.

(26) 다니엘 에스의 문영학씨 교통사고 (1994년 10월 31일)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4거리에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문영학씨(57세)는 미군 다니엘 에스가 과속 운전하던 차량에 전치 8주 이상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문영학씨는 11월 20일 국가배상심의회에 3천9백만원을 배상 청구하였다.

(27) 화이트의 차혜선씨 살해 사건 (1995년 4월 5일)

미국 텍사스주 엠파소에서 화이트가 부인 차혜선씨(31세)와 심하게 다투 후 차를 몰고 집을 나가려는 것을 차혜선씨가 막자 차로 치어서 즉사시켰다.

(28) 에반스 앤드루 엘 외 2명의 이성미씨 외 2명 폭행 사건 (1995년 4월 19일)

경기도 파주군 감자바위 음식점 앞길에서 에반스 앤드루 엘 하사(36세, 주한미군 유엔사령부 공동감시지구 경비대 소속) 등 미군 병사 2명이 이성미씨(26세) 등 2명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후 금품을 털어

달아나다 미군 현병대에 붙잡혔다.

(29) 폴 줄렌 외 8명의 조병국씨, 황정근씨 외 2명 집단폭행 사건
(1995년 5월 21일)

춘천시 소양로 3가 한국통신 앞길에서 술에 취한 폴 줄렌 상병(22세, 캠프페이지 항공대 소속) 등 8명은 택시를 가로막고 운전자 조병국씨(35세)와 시비를 벌이다 이를 말리던 승객 황정근씨(25세) 등 2명을 집단 폭행하여 정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미군범죄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30) 알렌 데이의 우성철씨 교통사고 (1995년 5월 24일)

경기도 파주군에서 우성철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길을 건너다가 미군 속 알렌 데이(22세, 메릴랜드대학 한국분교학생)의 오토바이에 치었다. 알렌 데이는 캠프하우스 미군 현병대로 넘겨졌다.

(31) 브루스 노먼의 김천래씨 폭행 사건 (1996년 5월 24일)

김천래씨(39세) 그의 부인, 딸은 브루스 노먼 중사(36세, 오산 미공군기지 소속)와 한국인 운전자 사이의 시비를 벌이다가 노먼 중사에 의해 폭행을 당하였다.

(32) 미첼 크링커 외 3명의 김성근씨, 강호원씨 폭행 사건 (1995년 5월 27일)

대구 중구 봉산동 신한은행 앞길에서 미첼 크링커(16세)와 미군 20지원단 소속 미군 자녀 3명은 한국인 10여명과 시비를 벌이는 것을 구경하던 김성근씨(27세)와 강호원군(18세) 등 2명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양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미현병대에 넘겨졌다.

(33) 투로이 마넬라의 지홍용씨 어선 절도 사건 (1995년 5월 28일)

미군 투로이 마넬라 병장(24세, 캠프페이지 항공대 소속)은 강원도 양구읍 석현리 양구선착장에 묶여 있던 지홍용씨(48세, 어부)의 0.5t 어선을

훔쳐 타고 춘천군 신북면 송양댐까지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4) 로버트 조세프알 2세의 왕인희씨 폭행 사건 (1995년 6월 4일)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미군전용 로즈클럽에서 로버트 조세프알 2세 병장(25세, 미2사단 소속)이 왕인희씨(22세, 종업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열아홉 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혔다.

(35) 바버디릭 외 3명의 이기순씨, 고재현씨 집단폭행 사건 (1995년 6월 4일)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오빈스캐빈 미군전용 클럽에서 바버디릭 병장(29세, 미2사단 소속) 외 3명은 술을 마시다 어깨를 부딪힌 이기순씨(60세)가 항의하자 이기순씨와 이를 말리던 고재현씨(39세)를 집단 폭행하였다.

(36) 스미스 알린의 김형석씨 폭행 사건 (1995년 6월 9일)

김형석씨(40세, 상업)는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4동 뉴욕양화점 앞길에서 스미스 알린 상병(27세, 미2사단 소속)이 동료 병사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길가에 세워둔 승용차를 주먹으로 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알린 상병은 미군 현병대에 넘겨졌다.

(37) 신원미상 미군의 원근자씨 강도폭행 사건 (1995년 7월 7일)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에서 원근자씨(57세)가 운영하는 강변상회에서 미군 1명이 강도폭행을 하였다.

(38) 루이스 말도나도 외 3명의 이찬환씨 지프 절도사건 (1995년 8월 3일)

루이스 말도나도 상병(26세, 미2사단 소속)과 브라이언 워렐 일병(24세) 등 2명은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위너스버거 앞길에 세워둔 이찬환씨(30세)의 지프를 몰고 달아난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붙잡혔다.

(39) 제임스의 황덕기씨, 원용숙씨 교통사고 사망사건 (1995년 10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제임스(23세, 미2사단 소속)가 운전하던 군 용트레일러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황덕기씨(43세, 제5군단 305예비군 연대 소속 중령)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황덕기씨의 옆자리에 타고 있던 원 용숙씨(29세) 등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제임스 상병은 미 헌병대로 인계되었다.

(40) 존 네일 브로피의 배모씨 절도 사건 (1995년 10월 14일)

전 미군무원의 자녀 존 네일 브로피(19세)는 대구 남구 대명5동 축협 앞길에 세워둔 배모씨(38세, 상업)의 1백cc 오토바이 시트 밑에 있던 1백 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등 3백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미군부 대 영내에서 검거됐다.

(41) 장 안토니의 신원미상 한국인 폭행 사건 (1995년 11월 4일)

한국계 미국인 장 안토니씨(36세, 하알리아부대 청소년회관 무술교관)는 외국인 전용술집에서 만난 한국인 여자에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고막파열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 조사 되었다.

(42) 엘미슨의 오연수씨 절도 사건 (1995년 11월 8일)

부산시 해운대구 하얏트호텔 지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오연수씨(23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핸드백 속에 있던 52만원이 없어졌으나 엘 미슨(19세, 미2사단 소속) 일병의 호주머니 속에서 오씨가 소지하고 있던 부적이 나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이 조사하였다.

(43) 루이스 드웨인의 노점상 절도 사건 (1995년 11월 11일)

노점상 손수레에서 모자를 훔쳐 달아난 루이스 드웨인(30세, 미2사단 소속) 병장을 절도혐의로 붙잡아 미군 수사기관에 넘겼다.

(44) 빈센트 로버트의 홍경형씨 폭행 사건 (1995년 11월 12일)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송탄 산부인과 앞길에서 미군용 차량을 타고 가던 미공군 빈센트 로버트 상병(33세)은 홍경형씨(33세, 금성택시 운전사) 와 차선 시비를 벌이다 홍경형씨를 차에 매달고 200m를 질주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로버트 상병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했다.

(45) 바바라 알폰스 외 10여명의 호프집 절도사건 (1995년 11월 17일)

수원시 매산로 신세대 호프집에서 바바라 알폰스 병장(23세, 미공군 소속)은 동료 10여명과 술을 마시고 난 후 대형 맥주 잔을 훔치려다 주인에게 발각되어 인근 슬라브 가옥 지붕 위로 달아나다 슬라브 15m가량을 파손시켰다.

(46) 리차드 제이의 이호범씨 폭행 사건 (1995년 11월 18일)

이호범씨(34세, 술집 지배인)는 평택시 팽성읍 ‘톱랩’ 클럽에서 미군 10여명이 술을 마시다가 폐싸움을 벌이는 것을 말리다가 리차드 제이 상병(28세, 미공군 소속)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47) 말콤 로겐 외 8명의 박성진씨 집단폭행 사건 (1995년 11월 18일)

박성진씨(34세)는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상폐교에서 술에 만취된 말콤 로겐 상병(25세, 미2사단 소속) 등 8명이 난폭운전을 한다며 차를 가로막고 시비를 걸어 미군 3명에 의해 집단폭행당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48) 웨이트 크리스토퍼 세실의 죄영일씨 살해사건 (1995년 11월 18일)

죄영일씨(57세, 택시운전기사)는 웨이트 크리스토퍼 세실 일병(23세, 미2사단 소속)을 영업외지역이라 승차를 거절하였는데 세실 일병은 택시 뒷문짝을 발로 차 25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달아나다 순찰중인 헌병대

로 이첩되었다.

(49) 월리엄스 매키드 외 3명의 신상후씨 집단폭행 사건 (1995년 11월 20일)

속칭 텍사스촌 오션바 주점 앞길에서 병크힐 소속 월리엄스 매키드 상병(21세) 등 미군 3명이 술에 취해 신상후씨(58세)에게 근처까지 태워다 줄 것을 요구하다 시간이 늦어 갈 수 없다고 하자 집단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50) 티어도어 히 노조사의 조애선씨 폭행 사건 (1995년 11월 25일)

티어도어 히 노조사 이병(20세, 미2사단 소속)이 동두천시 보산동 클럽 뒷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의 와이퍼를 뜯어내 보닛을 찍어대다 이를 말리는 조애선씨(56세)를 폭행한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붙잡혔다.

(51) 졸리모어 월리엄의 전모씨 폭행 사건 (1995년 12월 2일)

춘천에서 졸리오어 월리엄 이병(20세, 캠프 페이지 61 정비대)은 술에 취해 전모씨(21세)의 가정집에 침입하여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미현병대에 인계되었다.

(52) 케네스 외 4명의 김용수씨, 김정자씨, 박종민씨 상해 사건 (1996년 5월 14일)

대구시 남구 봉덕동 미8군 주둔지 부근에서 술에 취한 케네스(19세) 등 202통신대 미군속 자녀 십대 4명이 김용수씨(30세) 집 대문과 김정자씨(34세) 가게 입간판, 박종민씨(24세) 소유의 화물차를 파손했다.

(53) 프랜시스 마이클의 난동사건 (1996년 5월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2동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가던 프랜시스 마이클 중사(30세, 미군범죄수사대 소속)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을 들이받고 도망치다 주민들에게 붙잡혀 미현병대에 이첩됐다.

(54) 나이트 루이스몰드, 로버트 튜웨인의 김모씨 행패 사건 (1996년 11월 3일)

나이트 루이스몰드 일병(21세)과 로버트 튜웨인 일병(20세)은 춘천에서 술에 취해 사창가에 설치되어 있는 콜박스를 깨며 이를 막리던 주인 김모씨(61세)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미현병대에 인계되었다.

(55) 브라이언 월콕스의 윤지현씨 사기 사건 (1996년 11월 31일)

윤지현씨(32세, 영어강사)는 우연히 월콕스 병장을 알게된 후 1997년 1월 7일 1백 7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월콕스 병장이 만남을 회피하며 돈을 갚지 않는 내용의 사기를 당하였다.

(56) 부시 보디니 외 5명의 전종렬씨 외 2명 집단폭행 사건 (1997년 2월 9일)

전종렬씨(24세) 외 2명은 대구 중구 유신학원 근처에서 미군속 부시 보디니 외 5명이 한국인 택시운전기사를 집단 폭행한 후 차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추격하는 도중 집단폭행 당하였다.

(57) 신원미상 미군속의 권순옥씨 폭행 사건 (1997년 5월 14일)

대구 광역시 남구 이천1동 권순옥씨(44세)는 자신의 상가 입구에 차를 주차하고 다른 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간 미군속에게 항의하다가 안면을 구타당해 입안이 파열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58) 차니 트레일의 이현주 어린이 성추행사건 (1997년 5월 31일)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한모씨(56세) 집에 차니 트레일 일병(26세, 미2사단 소속)이 알몸으로 침입해 한씨의 외손녀(6세)를 성추행하다 가족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59) 폐나 테즈 루이스의 이순자씨 교통사고 (1997년 7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역전 동호다방 앞에서 길가 쪽으로 바짝 다가와 서 서 있던 이순자씨(44세)는 폐나 테즈 루이스(19세, 미2사단 소속)가 운

전하던 차의 뒷범퍼에 치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60) 폴린 데이빗의 한상근씨 시비사건 (1997년 7월 26일)

한상근씨(34세)는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43번국도 순천향병원 앞 서울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폴린 데이빗이 타고 가던 차량에 손상을 입혀 시비가 붙었다. 사과에도 불구하고 폴린 데이빗은 한상근씨 차량을 부숴 한상근씨가 폴린 데이빗 차량에 매달려 항의하자 폴린 데이빗은 한상근씨를 1km나 매달고 달렸다.

(61) 허텔 조셉 칼빈, 로저 크리스토퍼지 외 2명의 전영철씨 폭행 사건 (1997년 9월 20일)

허텔 조셉 칼빈 상병(미2사단 소속)과 로저 크리스토퍼지 상병(미2사단 소속) 등 2명은 전영철씨(39세) 집 유리창을 깨고 달아나다 뒤따라온 전영철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62) 에릭존슨의 박용선씨 외 2명 교통사고 사망사건 (1997년 11월 25일)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방석리 앞길에서 미군트럭과 소나타 택시가 충돌하여 인도까지 밀려난 택시는 완전히 파손되고 택시 운전자 박용선씨, 승객 백승용씨, 여자 승객 1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63) 스코트 외 미군 3명의 정모씨 집단폭행 사건 (1997년 12월 31일)

정모씨는 서울 지하철 종로5가 역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스코트 일병 등 주한미군 3명에게 항의하다가 이들에게 집단폭행당해 전치 1주의 부상을 입었다.

(64) 신원미상 미군의 박일남씨 폭행 사건 (1998년 2월 12일)

용산 미군기지 영내 빌딩에서 박일남씨(택시운전기사)는 신원미상 미군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이상의 상처를 입었다.

(65) 브랑크 엘크의 이한우씨 폭행 사건 (1998년 5월 19일)

경기도 하남시 산곡동에서 브랑크 엘크(콜번 부대 3연대 통신대대 소속)는 이한우씨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66) 미2사단 주한미군들의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주민들 폭행 사건 (1998년 5월 30일)

경기도 연천면 미산면 동이리에서 야간 훈련을 이유로 마을 통제를 하는 미군들에게 항의하는 주민들을 미2사단 소속 주한미군들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윤광진씨(26세), 양경섭씨(39세), 김병근씨, 이송학씨가 전치 1주에서 10주까지의 상해를 입었다. 그후 8월 13일 피해자들은 약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

(67) 헤크얼, 트루지오 마이클 외 1명의 3인조 슈퍼 강도 사건 (1998년 5월 3일)

부산 해운대구 우1동 대진 슈퍼에 헤크얼(22세, 하얄리아 부대 소속)과 트루지오 마이클(22세, 하얄리아 부대 소속)과 군속 1명 등 3인조 강도가 침입하여 슈퍼주인 정외술씨(43세)를 위협하고 금고를 뒤진 후 달아났다.

제 3 장

다른 나라 SOFA와의 비교

제1절 미-일 SOFA 협정과의 비교

제2절 미국-필리핀 SOFA 협정과의 비교

제3절 NATO SOFA와 독일보충협정상의

형사관할권 및 환경관련 규정과의 비교

제1절 미-일 SOFA 협정과의 비교

1. 미-일 협정의 구성

일본과 미국사이에는 「일本国과 미합중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일本国과 미합중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기한 시설과 구역 및 일본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이 모두 1960년에 체결되었다.

2. 형사재판권

1) 적용범위

(1) 한미협정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협정 제22조 제1항 (가)) 이에 따라 합중국 군당국은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와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

적 권리를 가진다.(협정 제22조 제3항 (가)) 여기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의 가족은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를 말한다.(협정 제1조 (다)) 그러나 합중국 법률의 현상태하에서 합중국 군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 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합의의사록 제22조 제1항 (가)에 관하여)

(2) 미일협정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의 군법에 따르는 모든 자에 대하여 합중국의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모든 형사상 및 징계상의 재판권을 일본국에서 행사하는 권리를 가진다.(협정 제17조 제1항 (a)) 일본국당국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이 일본국의 영역내에서 범한 죄로서 일본국의 법령에 의하여 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협정 제17조 제1항 (b)) 미일협정에 있어서 가족은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게 의존하는 자이다.(협정 제1조 (c))

(3) 비교분석

미일협정의 적용대상자는 군법에 따르는 자이므로 미국 군대의 구성원 만이 미군당국의 형사재판권 대상이 되고 군속 및 가족에 대해서는 군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미군당국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에 한미협정은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 까지 미군당국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하므로 미군당국이 행사하는 형사재판권의 인적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점이 문제이다. 또한 한미협정은 미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기타 친척' 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규정내용 자체도 모호하고 범위도 더 확대되어 있다.

한편 미국의 현행 법률체계아래에서는 평화시에 군당국이 민간인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군속 및 가족에 대해서 미군당국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미군당국이 군속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형사재판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은 미국국내법규에도 위반된 규정이다.

2) 공무판단의 주체

(1) 한미협정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어느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가 그 자에 의해서 범해진 것이라면 그 범죄가 공무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뜻을 기재한 증명서로서 합중국의 군당국이 발행한 것은 제1차적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합의의사록 제22조 제3항 (가)에 관하여) 공무증명서는 장성급장교만이 공무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고 합의 수정되지 않는 한 증명서는 결정적이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군대의 어떠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도 토의, 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해당 지방검찰청, 지청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검사는 어떠한 의문시되는 공무증명서에 대하여 법무참모 또는 적절한 법무장교와 토의할 수 있고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무부당국자는 주한미군 법무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과 토의할 수 있으며 또 합의되지 못하면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여기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을 하도록 회부할 수 있다.(양해사항 제22조 제3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2) 미일협정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무원이 어느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 있어서 그 기소된 범죄가 그 자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이라면 그 범죄가 공무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뜻을 기재한 증명서로서 그 지휘관 또는 지휘관에 대신할 자가 발행한 것은 반증이 없는 한 형사절차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그 사실의 충분한 증거자료가 된다. 위 진술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일본국 형사소송법 제318조를 해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합의의사록 제17조 제3항의 a (2)에 관하여)

(3) 비교분석

미군과 군속이 공무집행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이 1차적인 재판권을 행사하므로 공무중의 범죄였는 지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쪽이 재판권을 행사하느냐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런데 한미협정은 미군의 장성급장교가 발급한 공무증명서가 결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공무여부는 전적으로 미군당국의 판단에 좌우되게 되어 있고 일단 미군측에서 공무라고 판단하여 공무증명서를 발급하면 합의로 수정되지 않는 한 결정적이어서 한국측에서 이를 뒤집을 수 없다. 한국측의 검찰청이나 검사등이 공무증명서에 대해 미군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는 있으나 만약 그러한 절차를 거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미군측이 발급한 공무증명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군측에서 발행한 공무증명서에 대해 결정적인 효력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미군측이 발급한 공무증명서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공무집행중의 범죄인지 여부는 대한민국검찰과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3) 재판권의 포기

(1) 한미협정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타방 국가의 당국으로부터 그 권리포기의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협정 제22조 3항 (다))

그런데 합의의사록에는 대한민국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속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나)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합의의사록 제22조 제3항 (나)에 관하여 1)

(2) 미일협정

제1차적인 권한을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당사국 당국에 그 취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인 권한을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당사국 당국이 그 권한의 포기를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협정 제17조 제3항 (c))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의 포기에 관한 상호절차는 합동위원회가 결정한다. 일본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 사건의 재판 및 일본국 당국이 제1차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죄로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하여 범한 사건의 재판은 상호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일본국에 있어서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로부터 적당한 거리내에서 직접 행해져야 한다. 일본국 당국 대표자는 그 재판에 입회할 수 있다.(합의의사록 제17조 제3항의 (c)에 관하여)

(3) 비교분석

한미협정의 합의의사록에 의하면 합중국 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를 매우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위 규정에 따라 미군당국의 재판권포기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검찰이 중요 강력범죄를 제외하고는 미군피의자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대부분 포기하고 있다. 반면에 미일협정의 경우에는 재판권을 일률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권의 포기에 관해서 합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형사재판권에 대한 제약이

한미협정보다 덜하다. 또한 일본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 를 포기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일본국 당국 대표자의 입회가 허락된 가운데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로부터 적당한 거리내에서 직접 행해져야 한다는 규정은 미군당국이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을 공개적으로 적절히 처리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구 금

(1) 한미협정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중국 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 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 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수사와 재판을 위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대한민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하고 사법절차의 진행에 대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협정 제22조 제5항 (다))

한편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피의자는 대한민국당국의 구금하에 두어야 한다.(협정 제22조 제5항 (라)) 그러나 안전에 관한 범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의 수중에 있는 피의자의 구금에 관하여는 그러한 구금을 하기에 적절한 경우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에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한다.(양해사항 제22조 제5항 (라))

(2) 미일협정

일본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여야 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자의 신병이 합중국의 수중에 있을 때에는 일본국에 의

하여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합중국이 이를 계속한다.(협정 제17조 제5항 (c)) 일본국 당국은 일본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으로 합중국의 군법이 적용되는 자를 범인으로 체포한 때에는 그 범인을 구속할 정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범인을 석방하여 합중국 군당국에 의한 구금에 위임한다.(합의의사록 제17조 제5항에 관하여 (1))

(3) 비교분석

한미협정에 따르면 피의자를 미군당국이 구금하고 있거나 혹은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여 구금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의자를 넘겨받아 재판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미군당국이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데 반해 미일협정에 의하면 범인이 기소된 때에는 일본국이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미일협정은 일본국 당국이 1차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범죄의 피의자를 구금한 경우 구속할 정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으면 계속 구금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한미협정보다 일본국의 구금권한이 강화되어 있다.

미군당국은 지금까지 대한민국당국이 미군등의 피의자를 체포하면 즉시 구금의 인도를 요청해왔고 그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당국은 피의자를 미군당국에 인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당국이 수사과정에서 미군피의자를 구금한 예가 전혀 없었다. 미군당국이 피의자인 미군이나 군속을 구금한다는 것은 비록 미군당국이 수사절차에 협조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수사당국이 미군의 구금시설에 있는 피의자를 법정구속기간내에 신속하고 충실히 수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설령 미군당국이 구금중인 피의자를 다시 넘겨받아 수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군피의자에게는 대한민국 형사피의자의 권리 외에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교통할 권리, 모든 수사절차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권리, 변호인 외에도 합중국의 정부대표가 피의자의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어서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쳐

수사를 해야 하므로 수사하는데 지나친 제약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당국에 체포되어 피해자와 목격자앞에서는 범행사실을 시인하다가도 일단 미군당국에 넘어가면 부인하기 일쑤인 피의자에 대해서 단기간의 구속기간내에 협정에 규정된 복잡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기소된 후 신병을 넘겨받는 미일협정의 규정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1차적인 재판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대한민국~~당국~~이나 미군당국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할 경우 구금을 하기에 적절한 경우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미국간에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대한민국의 구금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간에 협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체 포

(1) 한미협정

대한민국당국이 체포하고자 하는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 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 군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시설이나 구역의 주변에서 동 시설이나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현행범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합의의사록 제22조 제10항 (가) 및 (나)에 관하여)

(2) 미일협정

일본국 당국이 체포하고자 하는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재판권을 적용받지 않는 자가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시설 또는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일본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 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 군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합중국 군대 재판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즉시 일본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시설 또는 구역의 인접지역에서 당해 시설 또는 당해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현행범에 관련된 자를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체포할 수 있다. 이들 중에 합중국 군대 재판권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자는 즉시 일본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합의의사록 제17조 제10항 (a) 및 (b)에 관하여)

(3) 비교분석

한미협정에 의하면 미군당국이 미군부대내에 있는 미군이나 군속, 가족들을 체포하여 대한민국당국에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수사당국이 범죄를 저지르고 미군부대내로 도피한 미군이나 군속,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체포하기가 어려워진다. 반면에 미일협정의 경우는 미국 군대의 재판권을 적용받지 않는 자가 미군부대에 있을 경우에는 미군당국이 체포하여 일본국 당국에 인도하므로 일본국 당국은 미군당국에 대해 일본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미군이나 군속 또는 가족의 체포를 요청하여 인도받을 수 있게 되어 피의자의 체포가 한결 수월할 수 있다.

6) 형의 집행

(1) 한미협정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 인도를 합중국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협정 제22조 제7항 (나))

(2) 분석

위 규정은 이미 형이 확정된 미군 등이 대한민국 구금시설에 복역하고 있는 경우에 형집행이 완료되기 전에도 미군당국에 구금인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형벌권에 대한 큰 제약이다. 비록 미군당국이 적당한 구금시설에서 계속 구금한다 하더라도 미국법이나 미군당국의 방침에 따라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으로 석방되는 등 확정된 형의 집행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형선고의 의미가 쉽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미일협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은 없다.

7) 적대행위시 협정적용정지

(1) 한미협정

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재판권에 관한 본 협정의 규정은 즉시 그 적용이 정지되고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전속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협정 제22조 제11항)

(2) 미일협정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적대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합중국정부나 일본국정부는 타방정부에 대하여 60일전에 '예고함으로써 본조의 규정의 적용을 정지시킬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가 행사된 때에는 합중국정부와 일본국정부는 적용이 정지된 규정에 대처할 적당한 규정에 합의할 목적으로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협정 제17조 제11항)

(3) 비교분석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적대행위의 유형에 따라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적용내용에 제한을 가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나 적대행위의 개념자체가 모호한 점이 있는데다가 모든 적대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그 유형에 관계없이 미군당국이 미군, 군속 및 그들

의 가족에 대하여 즉시 전속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적대행위가 발생한 경우 협정의 적용여부, 적용범위, 적용 내용 등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8) 기타 형사상 특권

(1) 한미협정

① 합중국의 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다.(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사)에 관하여)

② 대한민국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참혹하거나 비정상적인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심판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변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적당한 때에는 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지 아니하는 권리, 합중국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가진다.(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사)(차)(카))

③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카))

(2) 분석

위 규정은 미군측 형사피고인에 대한 특혜규정인데 미일협정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정이다.

합중국의 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수사와 재판절차에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불필요한 규정이며 대한민국 당국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또한 참혹하거나

비정상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적당한 때에는 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지 아니하는 권리, 합중국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도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며 ‘참혹하거나 비정상적인 처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적당한 때’, ‘합중국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무죄판결의 경우 검찰측에서 상소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형사법제도가 서로 다른 대한민국에 미군당국이 자신들의 형사법원리를 강요한 것으로 부당한 규정이다.

3. 환경조항

한미협정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미군이 사용하던 시설과 구역을 대한민국에 반환할 때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나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 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협정 제 4조 제1항)

미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협정 제3조 제1항) 미국은 이러한 미군부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권을 근거로 대한민국정부 기타 단체의 환경오염조사 등을 위한 미군부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외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에 대해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거나 환경오염방지와 예방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이 한미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미일협정도 한미협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서 재일미군기지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제2절 미국-필리핀 SOFA 협정과의 비교

1. 필리핀 미군주둔의 법적 토대

- 1) 필리핀 공화국과 미 합중국간 군사기지에 관한 협정
(1947.3.14/이하 1947년 기지협정)
- 2) 필리핀 공화국과 미 합중국간 상호방위조약(1951.8.30)
- 3) 필리핀 공화국과 미합중국간의 필리핀에 대한 군사원조 협정의 확장에 대한 교환각서(1953.6.26)
- 4) 필리핀내 미군기지의 군사 전투작전 수행을 위한 사용과 군사기지 사용기간 및 종료, 상호방위에 관한 필리핀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합의각서(1959.10.12/이하 1959 합의각서)
- 5) 필리핀과 미국간 군사기지 협정 중 형사재판권 조항을 수정하는 협정
(1965.8.10/이하 1965년 형사관할권 수정협정)
- 6) 필리핀과 미합중국간의 군사기지협정(1947) 제29조를 수정하는 교환각서(1966.9.16/이하 1966년 교환각서)
- 7) 1947년 군사기지협정을 개정하는 필리핀정부와 미국정부간의 각서교환
(1979.1.7/ 이하 1979년 각서교환)
- 8) 미합중국과 필리핀 공화국정부간의 미군군사기지내에서 필리핀 국민의 고용에 관한 협정 (1968.5.27/ 이하 1968년 고용협정)
- 9) 필리핀과 미국과의 MOA. (마닐라 말라카낭국에서 주미 필리핀대사와 주

필리핀 미국대사가 서명한 Memorandum of Agreement/ 1983.6.1./ 이하
1983년 MOA)

2. 필리핀 · 미국 SOFA 협정의 특징

1) 순수한 기지협정

필리핀의 미군기지의 법적 토대는 주한 미군기지의 법적 토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주한미군기지의 법적 토대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는 포괄적 협정속에서 시설과 기지를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제5조) 반면 필리핀은 처음부터 미군기지를 규정한 독립된 기지협정을 먼저 체결하였다. 그것이 바로 1947년 3월 14일에 체결된 “필리핀공화국과 미합중국간의 군사 기지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 제 29조에 의하면 기지협정의 존속기간은 99년이었고, 양국정부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협정이 19년 만인 1966년 협정에서 기지 임대기간 99년을 25년으로 축소, 1991년에 끝나게 하였다.

협정이름도 “필리핀 공화국과 미합중국간 군사기지(Military Bases)에 관한 협정(1947. 3. 14)”이라고 함으로써 처음부터 군사기지 협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과는 다르다. 주둔군지위협정은 상호 방위, 상호관할권포기 및 상호 양허권 부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지협정은 물론 상호방위는 규정하고 있으나, 상호 관할권포기 및 상호 양허권 부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양국은 UN의 절차와 목표에 부합하는 협정을 통하여, 특히 필리핀은 미합중국에 대하여 양국의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자국영토의 일부를 무상으로(free of rent), 그리고 미국이 자국의 권한과 주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국 상호간 이익과 방위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동 필리핀 기지협정 전문에서도 “미합중국 하원에서 1944.6.29. 합동 결의에 의해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필리핀과 미합중국간의 상호 방위를 위

한 군사기지를 얻는 권한을 주었고, 필리핀 국회에서는 1945.7.18. 합동결의에 의해 필리핀대통령에게 ...군사기지설립을 위해 미합중국 대통령과 협상할 권한을 주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문은 양 정부는 필리핀 영토 안에 있는 “군사기지의 경계, 설립, 유지, 운영”에 관해 협의한다고 했다.

2) 명확한 기지 위치 명문화(부속 협정 1,2)

1947년 기지협정 제1조 1호는 “필리핀은 미국에게 본 협정 뒤에 부가된 목록 1에 열거된 필리핀 내에서의 군사기지를 사용할 권한을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동 협정 제1조 2호는 “필리핀은 미국이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목록 2에 열거된 군사기지도 필리핀에 통지한 후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의 군사기지 목록 1,2에서 우리는 군사기지를 투명하게 한 점과 군사기지 1,2 사이에 어느 정도의 사용권한 상 차이를 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군사기지선정의 결정을 필리핀 국회가 비준하는 조약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은 한미행정협정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3) 임대료 문제

1947년 기지협정의 전문에는 “무상”으로 99년간 대여한다고 했다. 1959년 합의각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1983년 MOA에도 기지사용료에 대한 구절이 없다. 다만 미국은 Clark 공항과 Subic 만의 지속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원조계획을 채택했다. 이것은 1979년 필리핀정부와 카터 행정부사이에 맺은 군사기지협정 서명으로써 명백해졌다. 군사원조에는 기지에 대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군사원조 특별회계 항목을 포함시켰다. 1979년 협정은 1980-1984년 기간에 500 million 달러를, 그후 레이건 행정부와의 협정은 1985-1989 회계년도기간에 900 million 달러를 군사·경제원조를 필리핀에 제공했다. 다만 미국정부는 이 군사원조액을 공식적으로는 기지임대료라고 하지 않았지만, 기능상 실제로는 기지임대료

로 기여하였다. 실제로 미국행정부 관리는 의회에서 군사원조작감으로 인해 기지협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증언한바 있다.

4) 군사 기지내 권리행사의 한계

한미행정협정과는 달리 1947년 기지협정 제3조 3호는 미군기지내에서 미군 측의 권리행사에 일정한 한계를 긋고 있다. 즉 “미국은 위에 규정한 권리, 권능,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리핀 영토내에서 항해, 항공, 육상 운송에서 필요한 권리를 방해할 정도로 불합리하거나 양국정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군사적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위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항에서 “...동 조항에 의해 권리, 권능, 권한이 인정되는 기지의 외부에서의 실제적 적용에 관하여는 사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양국 정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미군기지 밖에서 적용시는 양 정부의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양국정부에 의해 인정되는 군사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부여된 권리조차도 행사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5) 정기적인 기동 연습, 사전 합의

1947년 기지협정 제 6조에서 “ 미국은 필리핀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정기적인 군사기동연습을 위한 적절한 규모와 위치의 육지나 해안지역, 폭격이나 사격연습을 위해 필요한 부가적인 지역,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업무를 위해 필요한 중계비행장 등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 조문은 위와 같은 지역에서의 연습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합당한 주의와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6) 기지외의 보건시설

1947년 기지협정 제 8조는 “... 미국은 권한 있는 필리핀당국과 협력하면서 상호간의 합의조건에 따라 ... 기지 근처의 건강과 위생을 증진시키

기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미국은 본 조에 규정된 조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47년 기지협정 어느 곳에도 환경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 굳이 찾는다면 본 조항에서 기지 안팎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쌍방간의 노력의 약속이다. 그런데 특히 미국정부가 직접 기지 주변 건강과 위생에 피해를 야기시켰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하기로 명문화하였다.

주지하다시피 1991년 12월 미군이 철수한 후 과거 필리핀 주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은 오늘날도 문제가 되고 있다.

7) 형사관할권

1947년 기지협정 제13조의 형사재판권은 “필리핀과 미국간 군사기지 협정중 형사재판권 조항을 수정하는 협정(1965.8.10/이하 1965년 형사관할권 수정협정)”으로 수정되었다. 처음 1947년 기지협정 제13조의 형사재판권 조항은 매우 엉성하였다. 예를 들면 1947년 기지협정 제13조 2에서 “필리핀은 미국 군인이 기지외에서 저지른 다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범죄가 公務중에 일어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65년 형사관할권 수정협정은 나름대로 NATO 협정처럼 전속적 관할권과 경합적 관할권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는 1965년 형사관할권 수정협정이 한-미 SOFA 제22조 형사관할권에 비교하여 유사한 것과 중복되는 것은 제쳐두고 그 수정협정 중에서 한미행정협정에서 없는 것 그리고 특이한 것만 지적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양 제도의 공통점으로는 1) 피의자 신병인도시기는 최종재판 후에 가능토록 한 점 2) 형사피의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리를 부여한 점 3) ‘공무’의 개념으로 공무원인 개인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수행하는 임무와 기능, 권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은 양 협정이 모두 유사하다.

(1) 인적 적용 범위의 축소

한-미 SOFA 제22조 제1항 (가):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 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반면, 1965년 형사관할권 수정협정 제13조 1항 (나):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종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 재판권 및 징계권을 필리핀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형사관할권 수정협정 제13조 3항(나):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종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1차적 재판권을 갖는다”.

위의 비교에서 1965년 수정협정이 인적 적용범위의 축소를 통해 한미행정협정에 비교하여 인적 적용범위의 허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평시에는 미국 민간인인 군속 및 그 가족에 대한 합중국에 대한 재판권행사를 가능케 한다. 유사사례로서 NATO 협정 제7조(1)a 와 미일 협정 제16조(1)a 가 있다.

(2) 적대행위 발생시 형사관할권 정지를 60일전 사전통고 후 협의

한미행정협정 제22조 11항: 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관할권에 관한 본 협정은 즉시 그 적용이 정지되고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전속적 권한을 가진다.”

한편 1983년 MOA/V 형사관할권: 상호방위조약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적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필리핀정부나 미국 정부는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60일간의 통지에 의하여 군사기지 협정 제13조(형사관할권)의 어떠한 적용도 중지시킬 권한을 갖는다. 그러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중지된 조항을 대체할 합당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양국정부는 즉각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제13조의 규정은 계속하여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적대행위의 추상성과 형사재판권의 즉시정지는 남용우려가 있다. 미일 협정 제17조 11항, 나토협정 제15조 2항도 60일전 사전 통고 및 즉시 협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필리핀의 1983년 MOA의 형사관할권 규정이 한미행정협정에 비해 접수국의 형사주권을 확실하게 보호하여 주는 규정으로 보인다.

(3) 공무증명서 발급자로서 범죄혐의자의 지휘관 혹은 그 대리인

한-미 SOFA 양해사항 제22조 3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공무증명서는 법무참모의 조언에 따라 발급되어야 하며, 장성급 장교만이 공무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다.

1965년 형사관할권 수정협정 : 법무장교 또는 법무관의 권고에 따라 범죄혐의자의 지휘관이나 그를 대리하는 자가 발행한다.

공무증명서 발급자가 좀더 책임 있는 고위 장성급이 발행하는 것이 직속 지휘관보다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어 보인다.

공무증명서에 이의제기권자로서 필리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 한정시켜 놓았지만, 우리의 경우 일선 담당검사도 바로 이이를 제기할 수 있게 한 점은 특이하다.

(4) 필리핀과 미국이 합의하는 수용시설에만 구금이 가능

필리핀 당국이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들을 감금 혹은 구금할 때에는 필리핀과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들이 합의하는 수용시설에서 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필리핀 당국의 행형 시설에 대한 불신을 말해준다. 이와 유사한 한-미 SOFA 제22조 합의의사록 규정에서 합중국이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한 자유형 집행의 시설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소한의 수준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체포시 양국의 지위 불평등문제

1965년 수정협정 제13조 5항 (나): “필리핀 당국자는 미국군대의 구성

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미국군 당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외 다른 규정은 없다.

그런데 반대로 미군당국이 전속관할권이나 1차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필리핀정부에 통보함으로써 필리핀 정부는 미군당국이 행사하는 재판권의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와 권한이 있다. 피의자 체포시 양국의 지위의 평등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유사규정으로 한-미 SOFA 제22조 5항이 있다.

(6) 검찰의 공소권 제한 규정은 없다. 필리핀의 1965년 수정협정은 한-미 SOFA 제22조 9항 합의의사록처럼 검찰의 공소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7) 형사재판권 시행 위원회 설립

1965년 수정협정/시행 약정 4 : 합동위원회와는 별개로 형사관할권 약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국정부가 상호 협의를 요할 때 협력하기 위하여 [형사재판권 시행위원회]가 설립된다. 한-미 SOFA 제28조는 합동위원회만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8) 몰수 및 수용절차 합법적 명문화

동 협정 제22조는 “위 목록 1,2에 열거된 기지내의 개인, 조합,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몰수 및 수용절차에 의하여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리핀은 필리핀 법에 따라 몰수 및 수용절차를 진행, 집행한다고”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 미군지위협정은 이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다.

9) 임대기간 명시

1947년 기지협정 제29조는 임대기간 99년을 명문화하고, 그 뒤 양국정

부가 합의한 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했다. 그후 1959년 합의각서와 1966년 교환각서는 25년으로 수정하였다. 즉, 1947년 기지협정 제29조를 수정하는 교환각서 (1966.9.16)는 다음과 같이 1947년 협정 제29조를 개정하였다: “양국 정부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본 협정을 조기 종료시키지 아니한 이상, 본 협정 및 합의된 개정안은 1966.9.16.부터 25년간 효력을 지속한다. 그후 양국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되지 아니하면, 양국정부 중 일방이 1년의 기간을 잡아 통지함에 따라 협정은 종료하게 된다.”

10) 미군기지의 무기체제의 변화에 대한 통보의무 명시

1979.1.7. 군사기지협정을 개정하는 필리핀정부와 미국정부간의 각서교환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군사기지 협정이 종료할 때까지 이 개정안이 체결된 날로부터 매 5년마다, 이 협약의 대상, 조항, 기간 및 동 협정이 당사자 쌍방의 이익에 계속적으로 확실히 기여케 하는 시행방법 등을 포함하여 완전하고 철저한 협약의 검토와 재평가가 개시되고 완성된다” 따라서 필리핀 정부와 미국정부의 대표들간의 토의가 마닐라에서 1983.4.11.부터 동년 6.1.사이에 있었다. 그 검토기간에 도달한 양해사항(필리핀과 미국간의 M.O.A./1983.6.1.)에 따라 필리핀정부와 미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기지의 작전상 사용은 사전 협의

“필리핀 주권의 범위 내에서, 필리핀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그리고 동남아시아 집단방위조약에 따라 행해지는 군사작전 이외의 군사 전투작전을 위한 작전상의 기지 사용 또는 미국정부에 의한 기지내 장거리 미사일 설치는, 필리핀 내 군대를 포함한 미합중국 군사작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1979년의 개정 군사기지협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필리핀 정부의 협의를 거쳐야한다.”

(2) 출입자유 및 정보취득 권리

필리핀 내 미군의 활동에 관하여 필리핀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점을 확정하여야 한다.

- “기지사령관과 그의 지명 대리인은 미국 시설물의 모든 지역에 출입 할 수 있다. 그러나 암호지역 그리고 장비나 정보가 위치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곳은 예외로 한다. 장비나 정보 위치구역으로 분류된 지역에의 출입은 상호 합의 절차에 따른다.”

- “미국정부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필리핀 내 상주 미군의 현재수준과 장비 및 무기체제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필리핀정부에 대하여 필리핀내 상주미군의 여하한 주요변화나 장비 및 무기체제상의 변화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정치활동 금지

미군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필리핀 내에서 필리핀 법령을 준수해야하고, 또한 군사기지협정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닌다.

11) 미군기지내 필리핀 국민 고용 의무화

미합중국과 필리핀 공화국정부간의 미군기지 내에서 필리핀 국민의 고용에 관한 협정(1968.5.27/ 이하 1968년 고용협정)에서 고용특례로서 “필리핀 내의 미국 군대가 민간 고용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필리핀 국민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였다.

다만 필요한 기능을 필리핀 노동부와 협의하였으나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안보나 특별경영의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국민을 고용할 수 있다.

또 군사적 필요에 부합하는 한, 미국 군대는 근로자의 신분보장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필리핀 주둔 미군이 고용하는 필리핀 근로자들은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필리핀 당국이 지난 1950년대-1980년대에 행사한 형사관할권 수준은 전체적으로 한국의 형사관할권행사수준 보다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그 요인은 1972년 계엄령 선포후 통과된 필리핀 헌법과 그에 기초한 일련의 대통령의 포고령은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독소조항을 가졌고, 나아가 필리핀 정부의 정통성은 국민의 지지에 기반을 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권이 미국과 군부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 자신이 미국정부에 당당하게 자기목소리를 가질 수 없었다. 한 예로 필리핀 형사관할권규정 제13조는 형사피고인에게 현행 한미행정협정처럼 너무 많은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었다. 1947년 군사기지협정 제13조 형사관할권은 한국의 1950년대 대전협정 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1987년 2월 민주적 정부의 수립은 필리핀 헌법에 비핵지대화 규정을 명문화하고 마침내 상원은 1991년 12월에 미군기지연장을 거부하였다. 그후 필리핀은 100년만에 처음으로 외국군대 없는 자주 독립국가로서 민주주의의 쪽을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착실히 가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 라모스 대통령이 몇 년전부터 비밀로 미국정부와 미군을 다시 오게 하는 구두약속을 하고 그것을 상원에서 합법화하는 절차를 두고 매우 많은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소위 미군이 필리핀에 복귀하게 하는 법적 토대인 “방문 주둔군 협정/ The Visiting Forces Agreement”(VISFA)의 국회상정을 앞두고 일반국민과 반기지운동가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미군의 독특한 지위를 감안하여 필리핀의 경험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암시해주고 있다.

1. 필리핀정부가 정통성이 약해도 필리핀이 독자적 군사작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기지협정 체결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었음. 한국도 현행 한미행정협정과는 별도로 독립된 군사기지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한미간의 이해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2. 미군기지내에 무기체제변화에 대한 통보의무 명시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 기지의 작전상 사용은 필리핀 정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하고, 나아가 기지내의 무기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도 필리핀 정부에게 통보해 주게 되어 있다. 현재 주한미군기지내에 통제권이 지나치게 미군에 편중되어 있는 한국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향후 행협개정시에 최소한 미군기지내에 위험한 무기반입이나 주요한 미군작전에 대해 한국정부에 보고되도록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3. 1991년 기지반환후에도 기지내에 환경문제가 현재 크게 문제가 되고 있음. 독일통일후 소련군이 주둔한 동독땅은 오염으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다. 독일보충협정을 참조하여 최소한 기지내 환경조사권은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4. 군기지 수용시 필리핀법에 따르도록 명문화 한점도 우리의 경우와 대조적임. 동두천을 비롯한 90여곳에 공여지의 몰수 및 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침해를 구제해주는 수용절차를 투명하게 SOFA 협정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5. 군사기지의 구체적 이름을 조약에 명문화. 투명화 한점도 한미행정협정에 좋은 참고가 됨. 이를 통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6. 기지정책을 임대기지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한미방위조약처럼 군사기지를 무기한으로 해서는 곤란하며, 최소한 10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을 생각 해볼 수 있다. 갱신때마다 변화된 한반도의 이해를 행협에 반영하는 합법적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 미군기지주둔국인 아시아 여러나라의 시민단체간의 국제적 교류를 통한 의견 교환 및 운동경험 공유는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3절 NATO-SOFA와 독일 보충협정상의 형사관할권 및 환경관련 규정과의 비교

1. 독일보충협정의 연혁

1) 독일보충협정의 국제법적 근거

북대서양조약(North Atlantic Treaty: 1949년 4월 4일 워싱턴서명, 1949년 8월 24일 발효)의 제3조("본조약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체약국들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자조(self-help) 또는 상호원조(mutual aid)에 의하여 무력공격에 저항하는 개별적 및 집단적 능력을 유지하며 발전하게 한다")에 근거하여 미국 및 기타 체약국군대가 NATO 체약국영역내에 주둔하고 있다. 동맹국영역내에 외국군대의 평시주둔은 유엔 현장에 근거한 것으로, 현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의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1951년 6월 19일 NATO 체약국들간에 런던에서 체결된 국제협정으로 일명 런던협정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 체약국간의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North Atlantic Treaty Regarding the Status of Their Forces: 이하 'NATO-SOFA'라 약함)은 NATO 체약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법적 지위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출입국관리, 과세 및 관세면제, 형사 및 민사관할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과 20개 조문으로 구성된 'NATO-SOFA'는 1952년 8월 28일 의정

서(Protocol)에 의해 보충되었으며, 주둔지역에 따라 해당 접수국과의 특별협정으로 보완되고 있는데, 1959년 8월 3일에 체결된 '독일연방공화국에 주둔중인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 체약국간에 체결된 협정에 대한 보충협정'(Supplementary Agreement to the NATO Status of Forces Agreement with respect to Forces Stationed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이하 '독일보충협정'이라 약함)은 독일영역내에서의 외국군대의 법적 지위문제를 규율하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주독 외국군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2) 독일보충협정의 연혁

1959년 8월 3일 독일의 본에서 체결된 '독일보충협정'은 'NATO-SOFA'를 "독일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둔군지위협정으로 전문과 83개 조문 및 '보충협정의 서명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f Signature to the Supplementary Agreement)로 구성되어 있다. 동 의정서는 제1부 'NATO-SOFA'에 대한 합의의사록 및 선언'(Agreed Minutes and Declarations concerning the NATO Status for Forces Agreement)과 제2부 '보충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 및 선언'(Agreed Minutes and Declarations concerning the Supplementary Agreem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3년 7월 1일에 발효된 '독일보충협정'은 1971년 10월 21일과 1981년 5월 18일 및 1993년 3월 18일에 각각 개정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모두 세 차례 개정되었다. 전문과 총 52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3차 개정협정"(이하 '1993년 개정독일보충협정'이라 약함)은 기존의 독일보충협정을 대폭 개정하고 새로운 조항들을 신설하였는데, 특히 형사관할권 및 민사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규정들과 신설된 환경관련조항들(제54조A, 제54조B)은 주둔군범죄의 방지 및 처벌과 환경피해의 방지 및 구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3) 체약국과 외국주둔군의 일반의무

(1) 체약국의 상호협력의무

독일당국과 주둔군당국은 'NATO-SOFA'와 독일보충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협력(cooperation)이란 특히 (a) 파견국군대/국민의 안전확보 및 재산보호와 이를 위해 중요한 정보의 수집과 교환 및 보호, (b) 독일군대, 군속, 가족 및 독일국민의 안전 확보와 재산보호를 포함한다 (독일보충협정 제3조 1항, 2항).

독일당국과 주둔군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협력을 위하여 '긴밀하고 호혜적인 연락'(close and reciprocal liaison)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 3항a). 다만 동 조항은 국가안전이나 공공안전의 보호에 대한 자국의 중대한 이익에 저촉되거나 자국법규에 위반되는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체약국에 부과하지 않는다 (제3조 3항b: 개정 신설).

독일당국과 주둔군당국은 'NATO-SOFA'와 '독일보충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행정협정이나 기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4항).

주둔군당국은 "독일의 공적 및 사적 이익"(Germa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조 5항).

* '한-미 SOFA': 없음

(2) 외국주둔군의 일반의무

협정대상자 즉 외국군대와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은 접수국내에서 접수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협정정신에 배치되는 행위 특히 정치활동 (political activity)을 삼갈 의무를 지며, [파견국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NATO-SOFA 제2조).

* '한-미 SOFA' 제7조와 유사함. 차이점: 한국의 경우 초청계약자(개인, 법인)도 포함함. [] 부분이 없음.

2. 형사관할권 규정

1) NATO-SOFA의 형사관할권 규정

(1) 형사관할권규정의 적용대상

- 'NATO-SOFA' 제7조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파견국 군당국은 파견국의 '군법에 따르는 모든 자'(all persons subject to the military law)에 대하여 파견국의 법률에 의해 부여된 '모든 형사상 및 징계상의 관할권'(all criminal and disciplinary jurisdiction)을 접수국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접수국당국은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dependents) 즉 협정대상자가 접수국의 영역내에서 범한 죄로서 그리고 접수국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NATO-SOFA 제7조 1항).

* '한-미 SOFA' 제22조 1항의 경우에는 미군당국은 협정대상자에 대하여 미국법률이 부여한 모든 형사상 및 징계상의 관할권을 한국내에서 행사할 권리를 갖는데, 가족의 경우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법원판례상 평시에는 미군당국이 민간인(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에 대한 합의의사록에 의하면 평화시에는 미군당국이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미 SOFA'의 경우에는 초청계약자(invited contractors)는 원칙적으로 형사관할권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한국의 방위에 대한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여 체포, 구금, 자유형의 집행, 피고인 권리 등(즉 5항, 7항(b), 9항)에 대해서는 본협정이 적용된다. 초청계약자에 대해서는 제15조상의 일정한 특혜가 부여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군당국이 협정대상자에 대한 전속적 관할권을 행사한다(제22조 11항). 다만, 한국의 계엄령선포시 주둔군지위협정상의 일반적인 안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구성된 민간법원에서 재판할 것을 보장하면 군속 및 가족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행사요청을 허의적으로 고려한다 (1991년 개정양해사항).

- 가족의 범위: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의 배우자와 그 부양을 받고 있는 자녀(제1조 1항). 다만, 접수국의 국민이나 접수국에 통상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접수국당국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7조 4항).

* '한-미 SOFA' 제1조: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미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미-일 SOFA'의 경우는 기타 친척은 제외.

(2) 전속적 형사관할권

- 파견국 군당국은 '파견국의 군법에 따르는 자의 죄'로서 파견국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파견국 군당국이 전속적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행사한다. 접수국당국은 '군대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의 죄'로서 접수국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국당국이 전속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전속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죄에는 파견국과 접수국의 '안전'(securites)에 관한 죄가 포함된다. 여기서 국가 안전에 관한 죄에는 당해국에 대한 반역, 사보타지, 간첩행위 또는 당해국의 공무상이나 국방상의 기밀(secrets)에 대한 범률위반 등이 포함된다. (제7조 2항)

* '한-미 SOFA' 제22조 2항과 동일. 다만,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행위가 발생한 경우 형사관할권에 관한 본협정 규정의 적용이 정지되고 미군당국은 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 대해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다 (제22조 11항). 그리고 한국이 전속적 관할권을 갖는 경우라도 미군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군당국이 협정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징계적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제재가 유효함을 인정하여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2조 2항에 대한 합의의사록). 1991년 개정양해사항: 미군당국은 전속적 포기를 요청함에 있어 최대한 자제할 것을 양해한다.

(3) 형사관할권의 경합과 제1차적 관할권

- 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 파견국 군당국은, 오로지 파견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파견국군대의 다른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에 대하여 제1차적 관할권(primary right to exercise jurisdiction)을 행사한다(제7조 3항a).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는 접수국당국이 제1차적 관할권을 행사한다.(제7조 3항b)

- 공무집행중의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 판단주체는 파견국 군당국. 즉 문제의 범죄가 공무집행중에 공무로부터 야기되었다는 파견국 군당국의 증명서는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11) 유사한 공무증명서 절차가 NATO 체약국내에서 적용된다. 독일보충협정(제18조)의 경우에도 형사범죄가 공무집행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은 파견국법률에 따르며, 파견국의 관계 최고위당국(the highest appropriate authority)은 동 사건을 심의중인 독일법원이나 기타 당국에 공무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법원과 기타 당국은 동 공무증명서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무증명서를 독일법원과 기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연방정부와 연방공화국에 있는 파견국의 외교사절단의 토의를 통하여 '심의의 주제'(subject of review)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체약국당국은 관할권이 경합되는 모든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제7조 6항b)

* '한-미 SOFA' 제22조 3항, '미-일 SOFA' 제17조 3항도 동일. 다만, 일본의 경우는 공무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일본법원이 하도록 하고 있음. 1991년 개정양해사항: 어떤자가 특정 임무수행을 요구하는 행위로부터 실질적으로 이탈하면 이는 통상 그자의 공무밖의 행위를 뜻한다. 공무증명서를 발급하는 주무당국자는 장성급 장교라야 하고, 공무증명서에 대해 일선당담검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일선당담검사가 이의를 제

기한 경우에도 최종 3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합의되지 못하면 미군당국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제1차적 관할권의 포기와 협조

제1차적 관할권을 갖는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타방국가의 당국에 그 취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관할권을 갖는 국가는, 만약 타방국가의 당국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관할권행사의 포기(waiver)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sympathetic consideration)를 하여야 한다.(제7조 3항c; 한-미 SOFA 제22조 3항c; 미-일 SOFA 제17조 3항c; 독일보충협정 제19조)

- '독일보충협정'은 제19조에서 관할권의 포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독일의 사법행정이익'(interests of German administration of justice)이 독일의 관할권행사를 필수적으로 요청한다고 판단할 경우, 권한 있는 독일당국은 상기 통고가 접수된 후 21일 이내에 또는 당사국간에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군 또는 민간당국에 '성명서'(statement)의 형식으로 관할권행사의 포기를 '철회'할 수 있다(제19조 3항). 독일당국이 관할권포기를 철회한 것에 대해 관계당국간의 협의에 의해 양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독일에 주재하는 파견국의 외교사절은 독일정부에 '진정'(representations)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일정부는 독일의 사법행정이익과 파견국의 이익에 대해 정당한 고려를 행하여 대외문제에 대한 그 권한을 행사하여 동 의견을 해결한다 (제19조 4항). 독일사법행정의 주요한 이익이 독일의 관할권행사를 필수적인 것으로 요청하는 경우로는 i) 고등지역 법원이 제1심에 관여할 권한을 갖는 범죄 또는 검찰총장이 연방고등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범죄, ii) 군대와 군속 및 그 가족을 상대로 행해진 경우를 제외한 살인죄, 강도, 강간, iii) 이러한 범죄의 미수행위 또는 공모행위 등이 포함된다.(제19조에 대한 의정서)

* '한-미 SOFA' : 한국당국은 미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당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차적 관할권행사를 (원칙적으로) 포기한다 (제22조에 대한 합의의사록). 개정전 교환각서에서는 한국의 제1차적 관할권의 포기조항을 두었으나, 1991년 개정시 이러한 교환각서가 폐기되고 한국의 제1차적 관할권행사를 일단 인정하되 개별적 사안에서 미군당국이 한국에 그 권리를 포기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즉 관할권 포기요청은 범죄사실을 알게 된 후 21일 이내에 서면요청하도록 하고, 28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하되, 14일 연장가능하며, 제1차적 관할권을 가진 당사국이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통보하기 않을 경우에는 요청당사국이 경합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범죄피의자의 체포 / 구금과 인도

- 범죄피의자의 체포 구금에 있어 접수국당국과 파견국군당국은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접수국당국이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 가족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파견국당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범죄피의자가 파견국군당국의 수중에 있을 경우에는 접수국에 의해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는 파견국이 계속 구금하나, 일단 접수국이 기소하면 범죄피의자를 접수국에 인도해야 한다. (제7조 5항)

* '한-미 SOFA' 제22조 5항: 미군당국이 협정적용대상자(미군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 가족)를 체포했을 경우에는 "한국이 제1차적 관할권을 갖는 경우에만" 체포사실을 한국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국이 협정대상자를 체포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5항b)

(6) 범죄피의자의 수사 및 증거수집에의 상호협조

- 범죄피의자에 대하여 필요한 수사를 실시하거나 증거를 수집 제공하는데 있어(범죄에 관련된 물건의 압수와 인도를 포함함) 파견국 및 접수

국당국은 상호협조하여야 한다.(제7조 6항)

* '한-미 SOFA' 제22조 6항a와 동일.

(7) 사형집행의 제한과 자유형집행의 협조

- 파견국당국이 사형선고를 내린 경우라도 유사한 사건에 관한 접수국의 법률이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파견국당국은 접수국내에서 이를 집행할 수 없다.(제7조 7항a)
- 파견국당국이 본조에 따라 언도한 자유형(imprisonment)을 집행하는데 있어 파견국의 원조요청이 있을 경우 접수국당국은 이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제7조 7항b)

* '한-미 SOFA' 제22조 7항과 거의 동일함. 다만 협정대상자가 한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군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7항b 후단)

(8) 공정한 재판

- 일사부재리의 원칙준수(제7조 8항)

* '한-미 SOFA' 제22조 8항과 동일.

- 접수국의 관할권하에 기소된 형사피고인(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은 ① 지체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⑤ 공판전에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통고받을 권리, ③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과의 대질권, ④ 증인이 접수국의 관할권내에 있을 경우 자신을 위하여 강제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구할 권리, ⑥ 변호인 및 국선변호인 선임권, ⑦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⑧ 파견국의 정부대표와의 접견 교통권 및 법원규칙이 허용하는 경우 자신의 재판에 동 대표자를 입회시킬 권리 등과 같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7조 9항)

* '한-미 SOFA' 제22조 9항과 거의 동일함. 다만 제22조에 대한 합의의사록에서 미국정부대표의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행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점, 미군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재판을 거부할 수 있게 한 점,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해서 검사의 상소권을 제한한 점 등은 한국의 주권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불평등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9) 경찰권의 행사

- 파견국군대의 현병은 시설 및 구역내에서 경찰권을 가지며, 질서 및 안전유지를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all appropriate measures)를 취할 수 있다. 시설 및 구역밖에서의 경찰권행사는 접수국당국과의 약정과 연락하에 군대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제7조 10항)

* '한-미 SOFA' 제22조 10항과 동일.

(10) 설비, 장비, 재산, 기록, 공적 정보에 대한 안전보호

- 각 체약국은 타체약국의 설비, 장비, 재산, 기록, 공적 정보에 대한 적절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고 이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11항)

* '한-미 SOFA' 규정에는 없음.

2) 독일보충협정상의 형사관할권규정

(1) 파견국 또는 독일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의 판정

(offences punishable under the law of a sending state or under German law) - 파견국법률에 의한 범죄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독일법원과 당국은 재판절차를 정지(유보)하고 파견국당국에 통고한다. 파견국당국은, 통고접수후 21일 이내에 또는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파견국법률에 따른 처벌여부에 대한 확인(증명)서(certificate)를 독일당국에 제출한다. 독일법원과 당국은 동 확인서에 따라 자체적인 결정을 내린다. 독일법률에 의한 범죄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이 준용된다.(독일보충협정 제17조)

* '한-미 SOFA' : 없음

(2) 공무여부의 판정 (official duty)

- 제18조: 상기 2-1)-(3) 참조.

(3) 사형선고의 독일영역내 기소 및 집행금지

- 파견국당국은 사형부과에 이를 수 있는 기소를 결정할 경우 자체없이 독일당국에 통고하여야 함. 파견국당국은 독일영역내에서 사형선고를 집행하지 않으며, 사형부과에 이를 수 있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제18조A: 신설)

* '한-미 SOFA' : 없음

(4) 관할권의 포기 (waiver of jurisdiction: 상기 3-1)-(4) 참조)

- 관할권경합시 관할권포기의 경우 독일당국은 '파견국의 이익을 위하여'(in favor of that State) 제1차적 관할권의 행사를 포기하여야 함. [다만 사형부과에 이를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본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신설] (제19조 1항)

- 파견국 군당국은 제1항상의 관할권포기의 범주(대상)에 속하는 개별 사건(individual cases)에 관하여 통고하여야 함. 파견국당국은 제1차적 관할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제19조 2항) 또는 관할권행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권한 있는 독일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NATO-SOFA 제7조 3항c)

- 독일법원이나 기타 당국이 전속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형사피의자에 대해 발급된 모든 서류의 사본은, 파견국의 특별 한 또는 통상적인 요청에 따라, 파견국에 의해 설치된 연락기관(liason agency)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 6항a). [독일법원이나 당국은 연락기관이 군대의 구성원과 군속 및 가족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상 서류의 송달을 보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6항b: 대체)

- 본 조항을 시행하고 중요성이 적은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독일당국과 파견국 군당국간에, 통고 및 포기시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19조 7항)

* '한-미 SOFA' : 없음

(5) 잠정적 체포 (provisional arrest)

- 파견국의 군당국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거나 또는 수배증인 자로서 신원을 즉시 파악할 수 없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발부 없이 그 관할권에 속하지 않은 모든 자를 잠정적으로 구금할 수 있다.(제20조)

* '한-미 SOFA' : 없음

(6) 체포의 통고 (notification of arrest)

- 독일형법(개정 제4호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독일당국이 수사를 개시되거나 체포한 경우 동 조사를 지휘하고 있는 독일당국은 관련파견국의 군당국에게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함. 파견국당국이 독일의 안전을 해하는 사항과 관련한 행위와 관련하여 독일내에서 수사를 개시하거나 체포한 경우 파견국당국은 지체없이 독일당국에 통고해야 함.(제21조)

* '한-미 SOFA' : 없음

(7) 구금 (custody)

- 파견국당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에 대한 구금(custody)은 파견국당국이 행하며, 독일당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에 대한 구금은 '파견국당국'이 행한다 (제22조 1항).

- 독일당국이 체포한 경우 관련 파견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파견국당국에 인도함. 파견국당국이 체포한 경우나 상기 1항에 따라 범인을

인수한 경우 파견국당국은 수시로 독일당국에 구금을 이관할 수 있으며, 독일당국이 이관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행하여야 함. 오로지 독일의 안전에만 관련된 경우 구금은, 관련 파견국당국과 체결될 협약에 따라, 독일당국이 행한다.(제22조 2항)

- 파견국당국이 구금을 행하고 있는 경우 동 당국은 독일당국에 의해 석방, 사면 또는 형집행이 개시될 때까지 구금을 계속함. 파견국당국은 수사와 형사소송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체포된 자를 독일당국에 출두하게 하며, 동 목적의 달성과 사법과정(사법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all appropriate measures)를 취하여야 함. 파견국당국은 구금에 관한 독일당국의 요청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full account)를 행해야 한다. ⇒ 'NATO-SOFA' 제7조 5항 참조

* '한-미 SOFA' : 없음

(8) 접견권 (right of access)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관련파견국대표 및 독일당국대표의 접견권 상호인정.(제23조)

* '한-미 SOFA' 제22조 7항b, 합의의사록(제22조 9항에 대한)과 동일. 다만, 구금시설에 대한 미군당국의 시찰권(right to inspect)도 인정.

(9) 재판전 절차에 관한 상호원조 (mutual assistance during pre-trial proceedings)

- 범죄피의자의 체포, 구금, 수사, 증거수집을 위한 상호원조의무 ('NATO-SOFA' 제7조 5항, 6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함 (제24조).

* '한-미 SOFA' : 없음

(10)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국가대표의 참석권(right of a national representative to attend criminal proceedings)

- 협정대상자에 대한 형사관할권이 독일법원이나 독일당국에 의해 행사하는 경우, 파견국대표는 그 재판에 참석할 권리를 가짐. 범죄가 오로지 독일이나 독일내의 '재산'[협정대상자가 소유하는 재산은 제외] 또는 독일인이나 '독일영역에 체재하는 자'(협정대상자는 제외)에 대하여 행해지고 또한 그에 대한 관할권행사가 파견국당국에 의해 행해졌을 경우에는 독일대표는 그 재판에 참석할 권리를 가짐. 다만 국가대표의 참석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안전요건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독일법원/당국과 파견국법원/당국은 재판장소와 일시에 대해 시의 적절한 상호통고를 행함.(제25조)

* '한-미 SOFA' : 없음

(11) 재판장소 (place of trial)

- 독일영역내에서 행해지고 독일이익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파견국의 법원에서 심리를 받는 경우 그 재판은 독일영역내에서 행해져야 함. 다만 파견국법률에 상이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군사상 긴급사태나 사법상 이익을 위하여 파견국당국이 독일영역밖에서 동 재판을 진행하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경우 파견국당국은 동 요청에 대해 독일당국이 시의적절한 논평을 행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러한 논평에 대해 '정당한 고려'를 행하여야 함.(제26조 1항)

- 독일영역밖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독일대표는, 파견국법원의 법원규칙이 허용하지 않거나 파견국당국의 안전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동 재판에 참석할 권리를 가짐. 파견국당국은 동 재판의 장소, 일시, 판결, 재판에 관한 최종결과에 대하여 독일당국에 통고해야 함.(제26조 2항)

* '한-미 SOFA' : 없음

(12) 경찰 및 현병 (police and military police)

- [군대 또는 군속에게 배타적 사용이 허용된 시설내에서 독일경찰은 독일의 공서와 안전이 위태롭거나 위반될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

음. 형사기소절차가 동 시설내에서 수행되어야 할 경우 파견국당국은 독일당국과의 협의하에 자체경찰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개정 추가). 군대의 현병은 공로, 공공수송기관, 식당 및 공중이 출입하는 기타 모든 장소를 순찰할 권리를 가지며, 협정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와 군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제28조 1항)

- 협정대상자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공공질서와 안전'(public order and safety)이 위태롭거나 방해되는 경우, 현병은 독일당국이 요청하면 질서와 군기를 유지 회복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8조 2항)

* '한-미 SOFA' : 시설 및 구역내에서 미군당국의 배타적 경찰권 인정. 시설 및 구역주변에 대해서도 그 안전을 위한 기수 및 미수의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음. 시설 및 구역내부에서 한국당국의 경찰권행사는 제한적(: 미군의 동의 또는 현행범 체포에 한함)

(13) 형사범죄에 대한 군대의 보호(protection of the forces against criminal offences)

- 독일당국은 협정대상자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해야 함.(제29조 1항)

- 독일당국은 상기 제29조 1항과 'NATO-SOFA' 제7조 11항(설비, 장비, 재산, 기록, 공적 정보에 대한 안전보호)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파견국의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i) 복무에 대한 자발성을 침해하기 위하여 협정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ii) 군대에 대한 모욕, (iii) 배반을 위한 유혹, (iv) 탈영을 위한 유혹, (v) 탈영의 방조, (vi) 사보타지, (vii) 군사정보수집, (viii) 군수사업의 운영, (ix) 군사관련 문서의 위조, (x) 공중사진의 촬영 등에 대하여 독일군대에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 보호를 보장하여야 함.(제29조 2항)

* '한-미 SOFA' : 없음

3. 환경관련규정

1) 독일보충협정상의 환경관련규정

(1) 보건과 위생 (제54조)

1항(개정) : 인간이나 동식물에 감염되는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에는 '독일법규와 절차'가 파견국군대와 군속에게 적용된다. 파견국당국은, 공공건강과 농작물의 경작이 위협받지 않는 한, 사용을 위해 제공된 시설내에서 자체의 법규와 절차를 군대와 군속 및 그 가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2항 : 파견국당국과 독일당국은 전염병의 발생, 전파, 제거는 물론 그에 관해 취한 조치를 즉시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 (전염병의 발생정보와 위생 및 검역조치의 상호 통고의무)

3항 : 파견국당국이 시설부근에서 위생 및 검역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동 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독일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4항 : 독일법상 수입이 금지된 물품은 독일당국의 동의를 받아 파견국당국이 수입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입으로 인해 공공의 건강이나 식물의 경작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5항 : 파견국당국은 독일당국의 동의하에 수입한 물품에 대해 검사와 통제를 행하여야 한다. 파견국당국은 그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공공의 건강이나 식물의 경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한-미 SOFA' 제26조(보건과 위생) : 협정대상자의 보건위생은 합동위원회에서 양국당국이 해결한다. 1991년 개정양해사항: 미군당국은 허가된 모든 입국항에서 격리대상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분기별로 한국 보건사회부에 제출하며, 그러한 질병이 발견될 시에는 적절한 격리조치를 취한 후 한국당국에 통보함. 미군당국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발생에 대해 한국의 관계당국에 통고하고 정보를 제공함.

(2) 환경영립성조사 (제54조 A: 신설)

- 1항 : 파견국은 독일내에서의 군대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 2항 : 본협정에 따른 독일법의 적용과 준수를 저해함이 없이, 파견국군대 및 군속당국은 가능한 한 일찍 모든 계획(projects)의 '환경영립성'(environmental compatibility)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동 당국은 문화재 및 기타 재산은 물론 인간, 동식물, 토양, 물, 대기, 기후와 풍경 및 그들 상호간의 작용에 대한 '환경적으로 중요한 계획의 잠재적 영향'을 확인,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본조사의 목적은 환경부담을 회피하고 치명적 영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절한 회복 또는 균형조치를 취함으로써 '환경부담' (environmental burdens)을 상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파견국군대 및 군속당국은 독일의 민간 및 군당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한-미 SOFA' : 없음

(3) 독일환경법규의 준수 (제54조 B: 신설)

- 파견국군대 및 군속당국은 독일환경법규에 따라, 오염도가 낮은 연료/윤활유/첨가제를 항공기/선박/차량의 운행시에, 그러한 사용이 동 항공기/선박/차량의 기술요건에 부합되는 한, 사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동 당국은 여객 및 공공사업차량에 관하여 특히 신차량의 경우 '소음 및 배출가스의 제한에 관한 독일법규'가, 지나치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준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권한 있는 독일당국과 파견국군대 및 군속당국은 본 규정의 적용과 감시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한-미 SOFA' : 없음

(4) 환경오염제거비용의 부담 (제64조 4항등)

- 제63조 4항: 재산의 사용료가 면제되지 않는 사항 (i) 수선및 유지비
(ii) 독일법률에 따라 연방공화국이 사용료의 경제책임을 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현행 공공사용료 (iii) 기타운영비

- '보충협정에 관한 서명의정서' 제63조 8항: 제63조 4항에서 언급된 '기타 운영비'에는 다음 비용이 포함됨:

- ① 도로, 포장도로 및 출입도로의 정비를 위한 비용
 - ② (개정) 하수오물과 쓰레기의 처리
 - ③ 하수구
 - ④ (개정) 군대에 의한 난방로 가동과 관련한 배출보호를 위한 조치 및 굴뚝청소
 - ⑤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화재 및 기타의 파괴에 대한 강제보험
- '보충협정에 관한 서명의정서' 제63조 8항 bis (신설):
- (a) 기타 운영비용에는 '물리적 환경피해'(physical environmental damage)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내에서의 조치.
 - (b) 파견국군대와 군속당국은 위해물질오염의 할당/평가/구제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동 비용은 '독일법'에 따라 결정됨. 동 당국은 신속히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 (c) 비용부담에 대한 견해차이는 동 당국은 독일당국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 '한-미 SOFA': 없음

2) 환경관련소송시 원용될 수 있는 비형사소송절차 규정

* '한-미 SOFA': 없음

(1) 소송서류의 송달과 연락기관 (service and liaison agency)

- 독일법원/당국이 파견국에 의해 설치되거나 지정된 '연락기관'(liaison agency)에게 비형사소송절차에 관련된 소송서류의 협정대상자에 대한 송달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제32조 1항a)

- 연락기관은 독일법원/당국에 의해 의뢰된 송달청구서를 지체없이 인정 접수하여야 함. 송달은 피소자소속 부대장이나 연락기관의 대표에 의해 수취인에게 전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전달이 완료되어 효력

을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통고서는 지체없이 독일법원/당국에 전달되어야 함.(제32조 1항b)

- 송달이 시행될 수 없는 경우 연락기관은 독일법원/당국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이유와 가능한 한 송달시행이 가능한 일자를 통고하여야 함. 독일법원/당국이 송달시행여부에 대한 통고를 받지 못한 경우, 연락기관이 송달청구서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21일이 경과하면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됨. 연락기관이 동 21일이내에 송달이 불가능함을 독일법원/당국에 통고한 경우에는 송달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송달대상자가 독일을 영구출국 하였을 경우 연락기관은 독일법원/당국에 이 사실을 즉시 통고하여야 하며, 독일법원/당국에게 그 권한하의 모든 협조를 제공하여야 함](추가신설). 연락기관은 상기 기간의 연장을 독일법원/당국에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이유를 명기하여야 함(제32조 1항c).

- 독일의 송달집행인이 독일법원/당국에서 진행되는 비형사소송 관련서류를 협정대상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경우 독일법원/당국은 이 사실을 연락기관에게 송달전이나 송달후 즉시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함(직접송달가능, 제32조 2항).

- 독일법원/당국이 항소심절차에 있어 판결문이나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파견국당국의 특별한 또는 통상적인 요청에 따라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까지, 그에 대해 연락기관에게 즉시 통고하여야 함. 다만 연락기관이 스스로 이러한 송달시행을 요청하거나 또는 피송달인이나 타 소송당사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독일법원/당국은 연락기관에게 동 반대(이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제32조 3항)

(2) 소송절차에의 일시적 불출석 (temporal non-attendance at proceedings)

- 협정대상자가 비형사소송절차에 일시적으로 불참하고 독일법원/당국이 부당한 지체없이 그러한 사실을 통고 받는 경우에는, 그들의 이해에

대한 법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고려가 부여되어야 함. 동 통고는 연락기관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제33조)

(3) 판결, 결정 및 명령의 집행 (enforcement of judgments, decisions and orders)

- 파견국 군당국은 독일법원/당국이 비형사소송절차에서 선고한 판결, 결정, 명령 및 조정에의 복종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권한내의 모든 협조를 제공하여야 함.(제34조 1항)
 - 독일법원/당국은, 비형사소송절차에 있어 사법 또는 행정판결/명령에의 준수를 확보하거나 법정모독을 처벌하기 위해서만 오로지, 협정대상자의 개인적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 공무수행중의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협정대상자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음. 파견국 최고위당국이 발급한 공무증명서는 독일기관을 구속함. 파견국의 강력한 이익 때문에 그러한 자유박탈에 반대한다는 파견국 최고위당국의 진정에 대해 독일기관은 '정당한 고려'를 부여하여야 함. 본항에 따른 자유박탈은 파견국 군당국이 관련개인의 재배치를 조정한 후에만 가능함. 자유박탈이 군대의 구성원과 군속의 배타적인 사용이 가능한 시설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파견국도 독일법원/당국과의 협의하에 자체경찰로 하여금 동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음. 이경우의 자유박탈은 독일법원/당국 대표의 입회하에 독일측이 요구한 정도까지 지체없이 행해져야 함.(제34조 2항a, b, c)

(4) 압류 (attachment)

- 독일법원/당국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조정을 채무자에 대해 집행할 경우, 동 채무자가 군대 또는 군속에 의해 본협정 제56조(노동)의 규정에 따라 고용된 것과 관련하여 또는 군대나 그 구성원에 대한 소송서류의 접 송달과 관련하여 동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지불)해야 할 경우, (a) 그러한 지불이 독일당국에 의해 행해지지 않고 집행기관이 채무자대신 판결채권자(judgment creditor)에게 지불하도록 동 당국에 요청하는 때에는 동 당국은 독일법률에서 규정된 범위내에서 이러한 청구에 응할 권리를 가

짐. (b) 독일당국이 그러한 지불을 행하지 않는 경우, 군대 또는 군속당국은 파견국의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청구서에 명기된 금액을 채무자 앞 지불금에서 차인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예치함. 군대 또는 군속이 동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치금의 한도내에서 이를 변제한 것으로 운용될 수 있다. 관련 파견국의 법률이 상기 지불을 금지하는 경우, 군대 또는 군속당국은 해당 판결, 결정, 명령 및 조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협조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제35조 a, b)

(5) 송달 (service)

- 협정대상자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은 파견국이 지정한 파견국언어의 간행물에 송달서류의 사본을 파견국언어로 공표함으로써, 또는 파견국이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연락기관에 개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 (개정 대체: 제36조 1항).
 - 독일의 송달집행인이 군대시설내에 있는 협정대상자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경우, 동 시설의 행정에 책임지고 있는 군당국은 독일의 송달집행인이 이러한 송달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제36조 2항).

(6) 법원/당국에의 출두 (appearance before courts or authorities)

- 파견국당국은,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출두가 독일법상 강제적인 경우에 한해 협정대상자의 독일법원/당국에의 소환 출두를 보장하기 위해 그 권한내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소환이 연락기관을 통해 행해지지 않는 경우, 연락기관은 독일법원/당국에 의한 소환에 대해 즉시 정보를 제공받는데, 독일법원/당국은 피송달인의 성명과 주소, 시간 및 장소를 알려주어야 함. 다만 이는, 군당국이 출두를 보장하기 위해 독일당국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협정대상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 (제37조 1항).

- 파견국 군당국이 그 출두를 보장할 수 없는 자가 파견국의 법정이나 군당국에 의해 증인이나 전문가로서 필요하게 된 경우, 독일법원/당국은 독일법률에 따라 그 파견국의 법원/당국에 이들이 출두하도록 보장한다 (제37조 2항).

(7) 정보의 공개 (disclosure of information)

- 형사 및 비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공적 기밀 및 기타 정보의 공개가 관련 당사국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적 기밀 및 기타 정보의 공개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관계당국으로부터 구해야 함 (제38조).

(8) 증인과 전문가 (witnesses and experts)

- 법정에 출두한 증인과 피해자 및 전문가에 대한 특권 및 면제는 그들이 출두하는 법원/당국의 법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어야 함. 다만 이들이 협정대상자인 경우에는 적절한 고려를 행하여야 함 (제39조).

(9) 공문서 및 군대재산의 불가침 (inviolability of documents and property)

- 'NATO-SOFA' 및 독일보충협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면제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문서와 군대의 재산에 대한 불가침 보장 즉 수색, 압수, 검열을 면제함 (제40조).

3) 한-미 SOFA상의 환경관련규정

- 환경이란 용어가 사용된 조항이 전혀 없으며, 환경에 직접 관련된 규정 또한 없음. 다만 보건 및 위생조항(제26조)이 있는데 불과.
- 다만 본협정 제4조(원상회복의무 면제조항)가 시설 및 구역의 환경오염피해시 원용될 수 있음. 그러나 동 조항은 기지 및 시설내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권리남용에 의한 중대한 환경오염피해나 미

군당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당국이 국제법에 근거하여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특히 미군당국은 기지내에서의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공공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는데(제3조 3항), 동 공공안전에는 기지 및 기지주변의 환경보호와 기지주변 주민의 보건 및 위생보호가 포함된다. 따라서 미군당국이 상기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미군당국의 관리소홀로 중대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는 환경규제에 관한 주권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4 장

SOFA의 개정방향

제1절 시설과 구역 관련 조항

제2절 형사관할권 관련 조항

제3절 민사청구권 관련 조항

제4절 노무관련 조항

제5절 환경관련 조항

제6절 통관, 관세 및 과세 등의 관련 조항

제7절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 조항 신설

제1절 시설과 구역 관련 조항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사용에 따른 “영토주권”의 체손문제 및 국민의 재산권침해문제도 다른 국가의 협정을 참조하여 이제 합리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SOFA 제2조부터 제5조는 시설과 구역을 규정하는 기본조항들이다. 위 조항들은 규정 자체부터가 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아가 합리적이므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많아 국가 주권성이 의심스러운 사대주의적 내용들도 내포하고 있다. 이 조항들의 문제점들을 유형화하여 보면, 시설, 구역결정, 토지사용료, 구역반환, 시설과 구역에 관한 관리권한, 구역반환상의 문제 등이다.

시설지원상의 법적 문제로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한-미 SOFA’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협정에 의한 지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만 근거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지원은 국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요컨대 장기적으로 미군의 기지사용의 근본적 해결은 소유권 개념에서 사용권 개념으로 실질적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평등한 방향으로의 SOFA의 「시설과 구역」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SOFA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은 본 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한다”(제22조 제1항/가)는 조항은